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육아휴직 대상 및 진급최저복무기간 인정 확대〉
■ 허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730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허영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2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(銓衡)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,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 전체로 확대하

는 한편,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3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여군 및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에서 모든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으로 확대하고, ②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첫째 자녀의 경우 1년에 한정했던 것을 전체 육아휴직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3항 등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48조(휴직) ① . ② (생략)	제48조(휴직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,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<u>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</u>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,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에 해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제49조(휴직기간) ① ~ ③ (생략)

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1. (생략)

2.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. 다만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.

가.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나.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휴직기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휴직기간 <단서 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□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장교·부사관 및 단기복무 여군,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에게만 허용하고 있음. 또한,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됨¹⁾.

□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, 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②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규정을 기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이후를 구분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군인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, 출산을 제고 및 군 간부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
□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, 공무원의 경우 최근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승진요소 최저연수에 산입되었으나, 개정 이후에는 첫째·둘째 이상 자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요소 최저연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됨.

1) 「군인사법」 제48조(휴직)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,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,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
제49조(휴직기간)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2.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. 다만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.

가.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나.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

「공무원임용령」(대통령령)	
개정 이전	제35191호(2025.1.7. 개정)
제31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, 직위해제 기간,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 1.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다.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은 그 휴직기간. 다만,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. 1)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)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	제31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, 직위해제 기간,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. 1.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다.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은 그 휴직기간. 다만,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☐ 이에 따라 군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과 군인 간 형평성, 최근 저출생 문제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☐ 다만 남·녀 전체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☐ 헌법재판소는 남성 단기복무 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(헌재 2008. 10. 30. 2005헌마1156)을 내린 바 있음.

헌법재판소 2008. 10. 30.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[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]

가.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,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.

나.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,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, 수혜자의 상황, 국가예산,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,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, 적용대상,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.

다.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신청권이 가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,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, 다른 의무복무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의 허용 대상을 정한 것이므로, 국가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
라. 장교를 포함한 남성 단기복무군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데 반하여 직업군인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복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, 입법자가 그와 같은 복무형태의 차이 및 육아휴직신청권이 갖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성,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,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, 국방력의 유지 등 국가가 추구하는 다른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,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의무복무 중인 단기장교를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
마.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,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.

☐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군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아니며,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, 제도 실시에 따른 국방력 부담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☐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하여까지 육아휴직을

보장하는 것은 출산양육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다는 점, 가족친화적인 국방환경을 조성한다는 점, 부모 모두가 출산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동의하는 입장임.

□ 육아휴직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군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방력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,

□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 이후 사회환경 변화와 요구에 따라 휴직 대상 기준 확대 및 경력인정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,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군인사법」 개정 권고²⁾에 따라 2021.4.13. 휴직 가능 대상자를 ‘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’까지 확대하였으며,

「군인사법」 육아휴직 관련 개정 연혁		
개정일	내용	대상
1999.1.29.	육아휴직 제도 신설	- 장기복무 장교, 준·부사관, 단기복무 중인 여군 중 1세 미만 자녀 양육으로 필요한 경우
2004.1.20.	휴직대상 기준 확대	- 1세 미만 → 3세 미만 자녀 양육,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필요한 경우
2006. 3. 3.	육아휴직기간 경력인정	-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
2007.12.21.	휴직대상 기준 확대 등	- 만 3세 미만 →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-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- 육아휴직기간 여군의 경우 1년 → 3년 - 진급최저복무기간 1년에 한하여 산입
2011.7.25.	휴직대상 기준 확대	- 만 6세 이하 →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
2016.12.20.	휴직기간 확대	- 1년이내(여군 3년이내) → 자녀 1명당 3년이내
2021.4.13.	휴직대상 확대 등	-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도 신청 가능 -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(자녀 1명당 1년에 추가하여, 첫째자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 시, 둘째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 시 전부 산입)

2)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(제2019-4소위39 국01호): ‘복무연장 남군의 육아휴직 허용’에 대한 「군인사법」 개정 권고

육아휴직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군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아니지만, 현행법에서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 남군 중 제한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차별없이 보장하려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10